

**「공공분야 디지털트윈 활용방안 연구」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국 토 교 통 부  
국토정보정책과**

# ||| 목 차 |||

I. 연구용역 개요 .....	1
1. 연구명 .....	1
2. 과업 기간 .....	1
II. 추진 배경 .....	1
III. 과업 내용 .....	2
IV. 입찰 및 계약방식 .....	3
V. 입찰 참가자격 .....	3
VI.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5
VII. 사업자 선정방법 .....	7
VIII. 제안관련 서식일람 .....	12

## I

### 연구용역 개요

1. 연구명 : 공공분야 디지털트윈 활용방안 연구
2.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II

### 추진배경

- 디지털트윈은 실제 사물과 동일한 가상의 모델을 구현하고, 시뮬레이션 기반의 분석·예측·최적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 제조업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활용되어왔으며, 호주, 싱가포르, 핀란드 등은 국토관리 분야에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 우리나라도 교통, 환경, 방재 등 국토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디지털 트윈국토의 조기 완성'을 국정과제로 반영하여 추진 중
    - \* [국정과제 38] (국토디지털화) 고정밀 전자지도, 3차원 입체지도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트윈을 조기 완성하여 교통, 환경, 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
- 우리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K-Geo, 브이월드)을 통해 관련 기관의 디지털트윈 활용을 지원하고 수집된 정보는 기업 등에 개방하며
  - 공공과 민간의 디지털트윈 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요 기관에 융복합 공간정보 및 활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
- 한편,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은 벤치마킹할 국내외 사례 또는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사업이 많지 않은 것이 활성화의 한계로 작용
  - 체감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 서비스를 발굴하고 협업을 통해 실증을 유도하여 성공적인 활용사례 발굴이 필요

- 이에 기 추진중인 지자체 시범사업\*과 함께 디지털트윈 **활용분야**를 추가로 발굴하고 정부부처 내 사업까지 **협력 대상**을 모색하고자 함

\* [1차, '21.9~'22.9] 10개 지자체(기반 5, 균형 5), [2차, '22.8~'23.8] 7개 지자체(공모 중)

- 디지털트윈 기술의 고도화는 공간정보 뿐 아니라 **분야별 모델링 기술의 발달**과 축적된 시계열 자료 등이 요구됨에 따라
- 다양한 부처·지자체의 **분야별 업무현황**을 조사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트윈 **적용분야**를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를 추진

### Ⅲ

## 과업 내용

### □ 디지털트윈 기술 적용 현황 및 시장동향 조사

- 공공의 문제해결에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한 **해외 사례\*** 및 해당 사례의 이용된 데이터 및 분석모델, **현업활용 여부** 등 조사

\* 국내외 사례조사는 ISP 등 선행연구와 진행 중인 사업(디지털 국토정보 R&D,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미래 신산업 촉진 기술 개발 기획 등)의 조사결과를 참고

- 국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디지털트윈 **관련사업 추진계획** 및 상황 조사
- 디지털트윈이 도입된 사례별로 **발전수준**을 진단하고 **확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디지털트윈의 가능성과 개선점 도출

\* (DT 3단계, 가트너) 1단계 시각화 → 2단계 모니터링 → 3단계 분석/예측/최적화

### □ 디지털트윈 활성화를 위한 공공 활용모델 발굴

- 디지털트윈 적용이 가능한 분야로서 현재 데이터에 근거한 **시물레이션**을 운용 중인 분야의 **업무추진근거, 프로세스, 관련 산업** 등 확인

-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적용 필요성 및 활용도 확대를 위한 공간정보 구축, 행정정보 제작, 분석모형 개발 등 **필요사항 분석**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국정과제와 주요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디지털 트윈 적용이 가능한 분야와 디지털트윈 적용 시 시간·비용 절감, 예측성과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

## □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국토 활성화 방안 마련

- 공공분야 디지털트윈 우선적용 대상사업 및 중장기 과제 도출
  - 국가공간정보 및 수요분야 공공데이터의 구축현황, 분석모형의 구체화 수준, 기반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한 실행가능성 및 우선순위 판단
- 향후 디지털트윈 관련 데이터 및 기술 수요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협업체계 운영방안 마련

## IV

###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V

### 입찰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공고일 현재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의한 일반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 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 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

## 1. 작성요령

- 제안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30매(단면) 이내로 아래한글로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 제출

##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제안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20분 이내로 하여야 함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입증불가 또는 허위작성 사실 발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문의처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044-201-3462, srmoon7@korea.kr)

다.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따름

#### 4. 유의사항

##### 가. 가격입찰방식(전자입찰)

- 가격입찰 방식은 전자입찰이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나.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청렴계약서」를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 다. 보안준수 및 보안서약서의 제출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우리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할 수 없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보안서약서」를 입찰 참여 시 제출하여야 함



## 1. 선정방식 및 절차

###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 부터 협상을 통하여 용역수행 업체를 선정
-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 나. 선정절차

####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80%) + 입찰가격 평가점수(20%)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기술 평가 점수도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2) 기술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일시/장소 : 별도 통보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책임자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 할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으로 발표함
- 프로젝터를 제외한 노트북 등 장비는 입찰참가자가 준비함
- 제안 발표 시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로 하고,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함

(3)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 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2. 평가기준

가. 입찰가격 평점 산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요소		체크포인트	평가방법	점수
1	연구인력	○ 관련 연구인력 보유 현황	계량평가	5
2	책임연구원	○ 책임연구원 경력	“	10
3	신인도	○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	5
4	기술·지식 능력 (과업접근 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비계량 평가	30
5	사업수행 계획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	20
6	투입인력	○ 투입인력의 경력, 유사프로젝트 수행경험, 학력 등	”	10
7	지원기술· 사후관리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연구 성과물 활용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	10
8	기타항목	○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	10
계				100

### 2) 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

- 연구인력 보유현황(5점) : 수행인력의 전문성

평가요소	배 점	등 급	평점
연구인력 보유현황	5.0	15인 이상	5
		10인 이상~15인 미만	4.5
		5인 이상~10인 미만	4
		5인 미만	3.5

※ 연구인력 : 해당업체 정규직원을 기준으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 있는 연구인력

○ 책임연구원 경력(10점)

구 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점 수	10	9	8	7

※ 책임연구원 평가는 경력증명서상의 해당분야에 대한 참여일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음

등급	참여 연구진 평가기준
(가)급	○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4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8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나)급	○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2년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다)급	○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라)급	○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책임연구원의 해당분야는 공간정보 관련사업(연구용역, 조사, 평가 등)에 한함

○ 신인도(5점)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항(최근 3년간, 공고일 기준)

구 분	0건	1건	2건	3건 이상
배점	5.0	4.5	4	3.5

### 3) 비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

항목 구분	배점	평가 정도				
		매우우수 (점수=A×1)	우수 (점수=A×0.8)	보통 (점수=A×0.6)	다소미흡 (점수=A×0.4)	미흡 (점수=A×0.2)
기술·지식능력 (과업접근방법)	30	30	24	18	12	6
사업수행계획	20	20	16	12	8	4
투입인력	10	10	8	6	4	2
지원기술· 사후관리	10	10	8	6	4	2
기타항목	10	10	8	6	4	2

### 4) 기술능력평가 점수 산정

-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득점의 합계 × 80%

#### 다. 기술능력 평가 시 평가 착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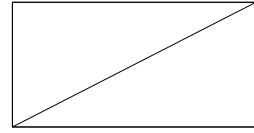
- 해당분야 업무수행 실적을 지닌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수행조직체계 및 연구인력 투입계획의 적정성을 중점 평가 착안사항으로 하여 평가

#### ※ 유의사항

- 점수계산은 각 평가요소별로 소수 이하 3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한다.
- 계량평가는 공동도급 시에는 도급 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실적, 경력 등 기간에 대한 산정기준은 이 기준이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공고일로 한다.
-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경력은 평가하지 아니한다(단,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한다)

1. 과업제안서(표지)
2. 회사소개서
3. 관련 연구 분야 인력현황
4. 본 과업 연구진 참여 인력현황
5. 연구진(책임연구원) 이력사항
6.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7. 청렴계약서
8. 보안서약서

<양식 1>



# 과업제안서

용역명 :

기관명 : (인)

<양식 2>

# 회 사 소 개 서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 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예산규모	2021년	2020년	2019년
9. 상시 종업원수			
10.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양식 3>

##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연구인력 평가를 위한 자료로 해당업체의 관련 연구인력(석·박사) 보유현황

## 본 과업 연구진 참여인력 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공 동 연구원					
연 구 보조원					
보조원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박사학위 소지자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필히 제출할 것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양식 5>

## 책임연구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학위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역명 (논문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본 과업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2. 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본 과업 관련분야 연구경력 기재

<양식 6>

###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업체명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부정당업자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항을 기재

##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